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. 9. 14 선고 2016가단2233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18. 5. 18 선고 2017나113028 판결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. 9. 14 선고 2016가단22335 판결

## 전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종결 2017. 8. 24.

판결 선고 2017. 9. 14.

## 주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충남 부여군 D 대 317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내지 9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㎡ 지상 창고를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

나. 피고 C은 위 가.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내지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㎡ 및 4 내지 6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㎡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 중 4/5는 원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, 피고 B은 충남 부여군 D 대 317㎡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8, 13 내지 15, 1, 16 내지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21㎡를 인도하고 (주문 제1항과 토지인도 중복 부분 제외), 피고 C은 위 토지 중 위 참고도 표시 7 내지 13, 18 내지 20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 부분 51㎡를 인도하고, 피고들은 9,400,000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#### 가. 각 토지의 소유관계

1) 원고는 충남 부여군 D 대 317㎡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2014. 10. 6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피고 B은 충남 부여군 E 대 311㎡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2006. 12. 4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 C은 1979. 9. 15. 충남 부여군 F 대 96㎡(이하 '이 사건 제3토지'라 한다)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#### 나. 각 토지의 점유현황 등

1)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맞닿아 있고,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는 국가 소유의 충남 부여군 G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.

2) 피고 B은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미등기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, 창고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

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내지 9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㎡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.

3) 피고 C은 이 사건 제3토지 및 위 도로 위에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,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참고도 표시 1 내지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㎡ 및 4 내지 6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㎡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3, 5호증의 각 기재,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게, 피고 B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7 내지 9, 17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㎡ 지상 창고를, 피고 C은 위 토지 중 위 참고도 표시 1 내지 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㎡ 및 4 내지 6,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㎡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(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5년경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창고를 신축하였다거나 민법 제216조, 제242조를 들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,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워 현 소유자인 원고의 철거청구를 거부할 수 없고, 위 각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,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나. 그 외에 원고는,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참고도 표시 18, 13 내지 15, 1, 16 내지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21㎡의 인도를, 피고 C을 상대로 위 토지 중 위 참고도 표시 7 내지 13, 18 내지 20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 부분 51㎡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,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들이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이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).

다. 또한 원고는,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등 합계 9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,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

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정호

별지